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기관 등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 금지 등 》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58호)

2025.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제2207558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기관 등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 금지 등(안 제26조, 제40조, 제65조, 제67조)	3

I.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제2207558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 15.

다. 회 부 일 : 2025. 1.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위험관리 및 기능유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및 성능평가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에게 대행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법

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등).

3. 검토의견

가.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기관 등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 금지 등(안 제26조, 제40조, 제65조, 제67조)

현행	개정안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② (생략) <u><신설></u>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u>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u> 2. <u>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③·④ (생략)	

현행	개정안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u><신설></u> <u><신설></u> ③ ~ ⑦ (생략) 법률 제205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5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의2. (생략) 1의3. <u>제26조제3항을</u> 위반하여 안전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u>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u> 2. <u>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5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5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u>제26조제4항을</u>-----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¹⁾)이라 함) 및 성능평가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의 소속 또는 자회사를 대행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공중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²⁾하고 있는 법률로,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점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³⁾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안전 등급 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자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등과 성능평가의 실시는 관리주체가 직접 점검·평가하거나,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⁵⁾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⁶⁾에 임의적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추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긴급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12. “성능평가”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

또는 의무적으로 점검·진단·평가의 대행을 의뢰하게 되는데,

임의적 대행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26조제1항⁷⁾ 및 제40조제2항⁸⁾에서 각각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에(제26조제1항),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안전진단전문기관에(제40조제2항)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무적 대행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11조제2항⁹⁾ 및 제26조제2항¹⁰⁾에서 각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의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제11조제2항)’과 ‘정밀안전진단(제26조제2항)’을 국토안전관리원·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적 대행 의뢰 대상에 대하여는, 현행법 시행령 제8조제4항¹¹⁾ 및

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②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¹²⁾에서 ①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¹³⁾, ②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대행 의뢰를 금지하고 있음.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

구 분		대행기관	비고
안전 점검	정기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임의적 대행 의뢰
	정밀안전점검		※ <u>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 의무적 대행 의뢰</u>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자 등에 대행 의뢰 금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의무적 대행 의뢰 (관리주체 직접 수행 금지) ⇒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자 등에 대행 의뢰 금지
성능평가			임의적 대행 의뢰

※자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6조, 제40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④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②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현행법 시행령 규정은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95년 (舊)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정 시 시설물을 시공한 자의 계열회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의뢰 금지로 규정¹⁴⁾된 후, 1996년에는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와 관리주체 소속 또는 자회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의뢰 금지로 확대¹⁵⁾되었고, 2002년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과 유사한 금지규정이 도입¹⁶⁾되었으며, 2018년에는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도 대행 의뢰 금지 대상에 포함¹⁷⁾되어 그 범위가

1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631호, 1995.4.20. 제정 및 시행)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③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1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993호, 1996.5.4. 일부개정 및 시행)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③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1728호, 2002.9.6. 일부개정 및 시행)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②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의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당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1.16. 전부개정, 2018.1.18. 시행)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④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점차 확대되어 왔음.

【시설물 설계·시공·감리자 등의 안전점검등 대행 금지규정 연혁】

구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1995년	-	-시설물을 <u>시공</u> 한 자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뢰 금지
1996년	-	-시설물을 <u>설계·시공·감리</u> 한 자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뢰 금지 - <u>관리주체 소속 또는 자회사</u> 에 대한 의뢰 금지
2002년	(정밀안전점검까지 확대)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뢰 금지 -관리주체 소속 또는 자회사에 대한 의뢰 금지	
2018년	- <u>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u>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한 의뢰 금지 -관리주체 소속 또는 자회사에 대한 의뢰 금지	

※자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법령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동 금지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 관련 조문에 이를 각각 규정(안 제26조 및 제40조)하는 내용으로,

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②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등에 대한 정밀안전점검(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마지막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 의뢰 금지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마지막 점검 외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시설물의 위험요인과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모든 점검·진단·평가의 대행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한편, 개정안은 안 제26조 및 제40조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한 자와 대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과태료(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관련 위반: 2천만원 이하, 안전점검·성능평가 관련 위반: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안 제67조)하고 있는데, 이는 동 금지규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설계·시공·감리자 등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